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사유

- 「청년기본법」 제정·시행에 따라 「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」를 「청년 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여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

4. 주요내용

-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추가(안 제1조)
-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(안 제3조)
-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(안 제9조)
-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·단체 등에 포상 근거 신설(안 제21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청년기본법」 제정(시행 2020. 8. 5.)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 조정, 청년위원회의 명칭 변경,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
-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,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일부 내용의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인 바,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3조는 “청년”의 연령 범위를 현행 “15세 이상 39세 이하”에서 “19세 이상 39세 이하”로 개정함.

- 이는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서 “청년”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 것에 따라, 청년 연령 범위의 하한선을 현행 15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한 것임.
- 현행 「민법」상 성년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, 15세부터 19세까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연령 범위에 속하는 바,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라 청년 연령 범위의 하한선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음.
- 다만, 조례에서 청년 연령 범위 상한선을 39세로 유지함. 이는 현재 충북의 청년대상 조직 및 사업(청년희망센터, 청년 광장 운영 등)이 39세까지를 대상으로 조직 및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따른 34세로 하향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 또한 17개 광역 시·도 중 충북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상한 연령을 39세로 규정하고 있고, 법률에 따라 34세로 규정한 곳은 5곳에 그치고 있음.

<17개 광역시·도 조례에 규정된 청년 연령범위('21. 6. 7. 기준)>

청년 연령 상한선	해당 시·도
39세(12개소)	충북, 서울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강원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제주
34세(5개소)	부산, 울산, 세종, 경기, 경남

- 물론,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 후단에 “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” 고 정하고 있는 바,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,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연령 범위 겹침으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에서 자칫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.

□ 청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- 안 제6조, 제7조, 제9조는 「청년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현행 “충청북도 청년위원회” 명칭을 “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 로 개정한 것으로 타당함.

□ 청년 기본법

제14조(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안 제9조 제5항은 현행 “~ 위촉직 위원은 ~ 청년을 5명 이상 포함” 을 “~ 위촉직 위원은 ~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” 으로 개정한 것으로, 도 내 청년의 위원으로서 도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또한, 안 9조제7항에서는 위원의 임기 연임 기한과 관련해, 현행 조례에서는 별도의 연임기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. 이는 연임 기한에 제한을 두어 많은 도민(청년 포함)이 위원회를 통

한 정책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타당함.

- 안 제21조는 청년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·단체·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한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청년기본법」 제정·시행에 따라 청년의 연령범위 조정, 청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, 다수의 도 내 청년이 위원으로서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,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